

지역상생교류센터 개관행사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서울시(기획조정실)에서는 서울시민들의 손쉬운 농·특산물 구매와 지역축제,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지역정보 획득을 위해 지역상생교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금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 진척 상황 등을 감안하면 5월 이후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개관행사시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판단되는바 본 개관행사의 개최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함.

① 선거일 60일전의 개관식이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의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또는 각목 예외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② 동 개관식을 서울시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서울시 행정1부 시장과 유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선거일 60일 전이라도 개관식을 치루지 않고 보도자료 등을 배포만 하고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④ 센터에 서울시 홍보물, 타 지역 홍보물을 비치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선거일 180일 이전 행위로서 제한되는지 여부

【센터 개관행사 진행(안)】

- ◆ 일 정 : 2018. 5월 중
- ◆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 ◆ 참여규모 : 서울시장, 관련 자치단체장 등 200여명
- ◆ 주요내용 : 개관 테이핑 컷팅식, 개관 축하 연설, 기념촬영, 다과회 등

□ 서울특별시의 검토 의견

(질의 1)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임.
- (가칭)지역상생교류센터의 설립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를 근거로 서울시가 세부시행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센터의 개관행사 등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홍보 미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바, 개관행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판단됨.
- 해당 개관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법령에 의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개최·후원이 허용되는 행사로 내부 검토함.

(질의 2)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의 적용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부단체장이 지자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함.
- 질의 1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해당 센터의 개관행사는 개최·후원이 되는 행사로 판단되므로 행정1부시장과 유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진행할 수 있다고 내부 검토함.

(질의 3, 질의4)

-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및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하는 행위를 선거일전 180일부터 금지하는 것임.
- 동법 제86조제5항에는 예외적으로 상시 발행·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 등 안내 홍보물”이 포함됨.
- 개소관련 보도자료 및 이후 센터에 비치될 서울시 및 타 지역 홍보물은 ‘안내 홍보물’이므로 법상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내부 검토함.

(2018. 2. 6. 서울특별시장 질의)

【 답 】 1.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지역상생교류센터 개관 일정에 따라 행정1부시장과 유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진행하에 개관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행위로서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 진행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귀문의 행사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2호타목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3,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관식을 개최하지 않고 지역상생교류센터 개소와 관련된 보도자료 등을 언론사에 제공한 후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 센터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4항 각호의 홍보물을 비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 실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위반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발행·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 2. 9.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